

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제도

□ 제도개요

對 일본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제도 (일본 수입가공식품 사전확인제도)

일본식품위생법(후생성고지 제119호)에 의거, 일본의 식품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된 수입가공식품을 후생노동성에 사전에 등록하고, 수입업자가 수입시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, 일본 일선통관검역소에서 신속하게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하는 제도

- 등록대상 : 가공식품(신선류 제외)
 - 일본 수출실적이 있으며 수출완제품을 직접 제조·수출하는 업체
- 등록효과 : 식품정기의무검사 주기완화(1년 → 3년) 및 통관시간 단축

- **검사주기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** (6만엔/1품목/1년 → 6만엔/1품목/3년)
 - : 수입통관관련 기존 "1회/년" 실시해야했던 식품의무검사가 등록 후 "1회/3년" 주기로 완화된에 따른 검사비용 절감효과
- **통관시간 단축**(통상소요시간의 50%)
 - : 등록품목에 대한 일선통관검역소에서의 전산별도관리 및 신속처리로 따른 통관시간 단축
- **통상검사(모니터링 검사) 완화**
 - : 수입통관시 비등록업체에 적용되는 통상검사(5% 무작위추출 모니터링 실시) 완화

□ 추진체계

